

『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설송조당 2관의 소재지를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맞게 명시하고
신설된 부부단실의 이용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사
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공설송조당 2관 소재지 명시(안 별표 1)
 -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-1
- 부부단실 이용 기준을 규정(안 별표 2, 별표 3)
 - 안치 조건 : 부부 동시 안치
 - 관내사용료 적용 :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인 경우
- 구미시 장사시설 사용료 관내·관외 구분 정비(안 별표 3)
 - 개장유골
 - 관내 기준 : 연고자 주민등록이 구미시 지역인 경우
 - 연고자 범위 : 부모, 배우자, 자녀
 - 골분
 - 관내기준 :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
 - 관외기준 :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
 - 외국인사망자
 - 관내기준 :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

사실증명서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

- 관외기준 :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중, 외국인등록
사실증명서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

○ 별표 제목 변경(안 별표 3)

- 추모공원 ⇒ 장사시설

○ 연장계약(안 별표 3)

- 공설송조당 연장계약시 관내·관외 구분은 최초 안치시의 계약
에 따른다.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명주소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
- 공설송조당 2관이 2019년 상반기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명시하고 부부단실 이용기준을 명확히 하며, 공설송조당 및 추모공원 사용료를 관내·관외 구분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공설송조당 2관 개관에 대비하고, 장사시설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